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대부료 연체 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하도록 하고
- 지방청사 신축시 적정규모로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제22조)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학교용지 등의 목적으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분납시 이자율 : 5퍼센트 → 4퍼센트
 -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등을 10년 이내 분납으로 매각시 이자율 : 8퍼센트 → 6퍼센트
 - 국가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매각대금을 5년 이내 분납시 이자율 : 8퍼센트 → 6퍼센트

-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적용 범위 제한(제23조의2제1항)
 - 공유재산을 2년 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 대부료가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적용하는 대부료 인상을 적용은 영리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 함
- 대부료등의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 요율 분리적용(제28조제1항)
 - 연체요율을 연체기간 정도에 따라 연 12~15퍼센트를 차등적용 하도록 함
- 청사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제47조)
 - 지방청사 신축시 표준설계면적기준 명시
 -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적용 받지 않는 지방청사 신축 시 1인당 면적기준 등에도 준용하도록 함
-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 신축시 타당성 조사 신설(제47조제3항)
 - 50억원 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 건물 신축시 타당성 조사는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토록 함

의안전문 :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 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4조의2” 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조건)” 을 “(사용·수익허가)” 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를 “명시하여야” 로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2조제1항중 “5퍼센트” 를 “연 4퍼센트” 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연 8퍼센트” 를 “연 6퍼센트” 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 을 “제23조제3항의 규정” 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를 “세입세출외” 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 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를 “교환차액을” 로, “연 15퍼센트의 연체료” 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 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 하되, 연재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9조의2제5항제1호중 “광역시”를 “광역시의”로,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을 “기타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39조제4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청사동의 설계)①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설

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와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중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층부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 완비 및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동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도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 지 사 실 : 165.30㎡(집무실,부속실,접견실 포함)
- 부지사실 : 71.28㎡(집무실,부속실,접견실 포함)
- 실국장실 : 56.16㎡(집무실,부속실,접견실 포함)
- 실과장실 : 17.92㎡
- 담 당 : 7.65㎡
- 직 원 : 7.20㎡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40~24㎡/인	25~49명 26~15㎡/인	50~99명 20~12㎡/인	100~149명 1.6~10㎡/인	150~199명 1.2~09㎡/인	200명 이상시 면적 =0.8㎡×사용인원
상황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시장·군수 수)					
서미스트 동선 분리	화장실	100명 미만 0.43㎡/인	100명~200명 0.40㎡/인	200명 이상 0.33㎡/인	기타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중 면적외 27%~33%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게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원실	[(6.5㎡×민원담당 공무원 수×1.1)+(0.13㎡×0.2㎡×민원인 수×0.5)]				민원실 공간화장 가능	
숙직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인	11.52㎡/인		8.64㎡/인		
자료실	(0.3~0.4㎡) × 공무원 수					
창고	0.72㎡/인 ~0.85㎡/인					
전산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면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송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열	연면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비(%)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설	6.6㎡		8.4㎡		10.2㎡	
주장비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연계공간면적 : (직부면적 + 부속공간면적 + 설비관계면적) × 30 ~ 40%

2. 도 의회

구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시·도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살수 확보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m ² + 방청석 수 × 1.5m ²	
		회의실	의원 수 × 33m ² + 담변석 면적	대/ 중/ 소
		위원회실	위원 수 × 82m ²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속	c	사무국장실	시·도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m ²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m ²	
		대기실	의원	의원 수 × 25m ²
			기자	50m ²
공간	d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m ²	
		휴게실	의원	의원 수 × 2m ²
			직원	직원 수 × 2m ²
			방청객	방청객 수 × 2m ²
			당직실	2인실 기준 15m ²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타	예비실(50m ²)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 × 30 ~ 4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 위임)①(생략) ②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군수로 하여금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귀속비율은 당해 수입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조(관리사무 위임)①(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①(생략)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③(생략)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③(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사용·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8. (생략) <신 설>		제14조(사용·수익허가) 명시하여야 1.~8. (현행과 같음) 9. 허가의 조건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중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6. (생략)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4퍼센트 1.~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p>④.....세입세출 의 현금.....</p> <p>⑤(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금)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금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간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③(생략)</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금) ①..... 교환차액을.....</p> <p>.....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제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 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제102조의5.....</p>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①~④(생략)</p> <p>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①~④(현행과 같음)</p> <p>⑤.....</p>

현행	개정안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시·군의 읍·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3.(생략)</p>	<p>1.</p> <p><u>광역시의</u>.....</p> <p><u>기타 이외의 지역</u>.....</p> <p>2.~ 3.(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③ (생략)</p> <p>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각 호에 의한다.</p> <p>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코드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p> <p>2.~5.(생략)</p> <p>⑤~⑥(생략)</p>	<p>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p> <p>1. <u>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u>.....</p> <p>.....</p> <p>2.~5.(현행과 같음)</p> <p>⑤~⑥(현행과 같음)</p>
<p>제47조(청사의 설계)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p> <p>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p> <p>3. 수평, 수직 중축이 가능한 설계</p> <p>4. 비상시 출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p>	<p>제47조(청사등의 설계)①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u>별표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u></p> <p>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동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p> <p>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p> <p>3. 수평, 수직 중축이 가능한 설계</p> <p>4. <u>출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u></p>

현행	개정안
<p>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p> <p>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p> <p>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p> <p>8. 각 사무실의 칸막이는 내벽력 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이 가능한 구조</p>	<p>5. 냉·난방시설 완비,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p> <p>6.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p> <p>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p> <p>③연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이 청사등 공용·공공용 건물 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예산의 편성)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건축비(소요사업비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01. 9. 15)

제74조(세입세출외현금 등의 금고보관)①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99조(사용료 등의 귀속)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대부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2. 변상금징수의 경우에는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
3. 매각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분양형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50

다. 관리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라. 처분신탁 : 처분수입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①잠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 11. 26>

② 5.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때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제102조의5(잡종재산의 신탁)①법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2이상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⑥.(생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별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99. 5. 24 삭제)